

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00년 9월 30일
조례심사특별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출일자및제출자 : 2000. 9 . 21 평창군수(기획실장)
- 나. 회부일자 : 2000. 9. 29
- 다. 상정일자 : 제79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조례특위(2000.9.29)
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기획실장 신대송)

가. 제 안 이 유

-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각종 조항과 상위법률과 중복규제 조항을 삭제 또는 완화하여 보조금 관리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.

나. 주 요 골 자

- 보조금의 교부조건 삭제(현행 제7조)
- 용도의 사용금지조항 삭제(현행 제11조)
- 보조사업의 변경내용 조항삭제(현행 제12조)
-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조항 삭제(현행 제12조)
- 보조사업의 신고사항중 “사업을 폐지하였을 때”는 승인사항임으로 삭제(현행 제16조 제2항)
- 보조금을 교부받는자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조항중 “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”와 “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 하지 않을 때”삭제(현행 제17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박태영)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률과 중복규제된 조항만을 골라 정비하려는 것임.
- 상위법률인 「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과 중복규제된 조항으로 평창군 보조금관리조례 제7조 “보조금의 교부조건” 제11조 “용도의 사용금지” 제12조 “보조사업의 내용변경” 제13조 “보조사업 실적보고”가 있으며 이것을 삭제 정비하려는 것임
- 제16조 보조사업 신고조항중 “사업을 폐지하였을 때”는 상위법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정비하려는 것이고
- 제17조 조항중 “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”와 “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 하지 않을때”는 보조금 교부결정시 검토되는 사항으로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됨.
- 조례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안으로 자구나 형식 등 법체계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(답변자 기획실장 신대송)

질 의 요 지	답 변 요 지
○ 보조금 교부조건을 부하지 않는지?	○ 과거에는 조례를 근거로 부했는데 예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하는 것임
○ 실적보고도 군에 보고하는지?	○ 마찬가지로임.

5. 토 론 요 지 : 없 음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필요한 사항 :

붙 임 :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10부